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6. 6. 18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6. 18
- 라. 상정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3차총무위원회(96. 6. 19)상정
- 마. 의결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4차총무위원회(96. 6. 20)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화·경영화 측면을 고려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- 기구조정
 - 통·폐합 : 4국 → 2국
 - 재무국 + 지역경제국 → 재정경제국
 - 도시계획국 + 건설국 → 건설교통국
 - 폐지 : 3과(시정과, 사회진흥과, 수도과)
 - 신설 : 1국 1사업소 3과(시민복지국, 상수도사업소, 정보통신과, 문화체육과, 시설과)
 - 명칭변경 : 1국, 7과
 - 소속변경 : 16과
- 실·과간 기능조정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읍부즈만 용어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없습니까?</p>	<p>○ 경기도 및 타시·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공통용어로서 고충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처리하므로 명칭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</p>

- 청소사업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?
- 의회사무국장 밑에 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방안은 있습니까?
- 시설1계, 2계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안이 있습니까?
- 녹지와 명칭을 공원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?
- 누수탐사계와 수리계를 합칠 수는 없습니까?
- 감사담당관을 시장직속으로 바꾸는 것은 상급기관 승인사항입니까?
- 당초에 시장직속으로 승인요청 했는데 변경되어 승인되었습니까?
-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
- 사회진흥과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?
- 산업과의 명칭을 적정하게 바꿀 수 없습니까?
- 읍부즈만을 의회소속으로 개편 시에도 상급기관 승인사항입니까?
- 관련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?

- 사업소 설치 후에 4급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.
- 수원, 성남, 안양 등 인근의 시와 협의하여 상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.
- 혼령에 시설1계, 2계에 사무분장을 하여 명시하겠습니다.
-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이 있습니다.
-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합니다.
- 승인사항입니다.
- 그렇습니다.
-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각종 질서유지 계도와 국민운동 단체의 지원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.
- 기구명칭이 타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승인사항입니다.
-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조직개편안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본 위원회 보고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렴, 이를 반영한 바 있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동조례안에 대해 각 안별로 축조심의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121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25
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옴부즈만 관련업무를 시민복지국 시민과에 두는 것이 적정치 않으며, 향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연구와 검토 후에 소속을 결정키로 함

2. 주요골자

○ 안 제8조(시민복지국)제2항 시민과의 분장사무 중 제3호 “옴부즈만 관련업무“삭제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8조(시민복지국) ①(생략) ②(생략) 1~2(생략) <u>3. 읍브즈만 관련업무</u> ③~⑤(생략)	제8조(시민복지국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~2(현행과 같음) <u>(삭 제)</u> ③~⑤(현행과 같음)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시장) ①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밑에 부시장을 둔다.

②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, 시장산하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조(기구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, 기획실, 총무국, 재정경제국, 시민복지국, 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

제4조(감사담당관실) ①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둔다.

②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자체 행정감사업무전반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
2. 조사, 감찰업무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

제5조(기획실) ①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, 공보담당관실,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.

②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의회운영
2. 시예산 편성 및 집행 감독
3. 경영수익사업 및 지방공단·공사 등 투자법인의 지도·감독
4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

5. 법제 및 소송 업무

③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정 홍보
- 2. 시정 기획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

④국제협력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2.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

제6조(총무국) ①총무국에 총무과, 민방위재난관리과, 정보통신과를 둔다.

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서무·의전 및 보안업무
- 2. 당면시책업무추진 및 선거업무
- 3. 공무원 현원관리 및 공무원 입면·교육
- 4. 직제 및 공무원 정원관리

③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·시행
- 2. 지역단위재난예방 및 재해대책업무 총괄

④정보통신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중·장기(단기)전산화 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망 구축
- 2. 전산화개발계획 수립 및 국가기간전산망 운영
- 3. 행정전화 및 팩시밀리 운영 유지관리
- 4.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

제7조(재정경제국) ①재정경제국에 세정과, 회계과, 지역경제과, 산업과, 공업진흥과를 둔다.

②세정과와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종합조정
- 2. 지방세 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
- 3. 세외수입 과정 및 지방세입에 관한 조정·통계

③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비 및 세입세출의현금 출납 보관
2. 물품의 조달 및 공사의 도급계약·용역계약 집행
3. 국·공유재산 관리

④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 대책
2. 상정 및 연료대책 추진
3. 노동조합업무 및 취업알선
4. 유통소비자 관련 업무추진

⑤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농지의 보전·이용관리 지도
2.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축산진흥사업

⑥공업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중소기업 지도 육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
2. 수출진흥업무
3. 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관리

제8조(시민복지국) ①시민복지국에 시민과, 사회복지과, 여성정책과, 문화체육과를 둔다.

②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처리에 관한 사항
2. 생활불편민원접수·처리 및 민원기동순찰대 운영

③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서민생활 보호대책 및 구호
2. 노인복지증진 및 가정의례 보급·지도
3. 국민운동의 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

④여성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2. 여성의 사회참여 관련 시책추진 및 여성단체 활동 지도·육성
3.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시설 지도운영

⑤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방문화예술의 진흥
2. 문화예술단체 지도·육성
3.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
4. 청소년 지도·육성

제9조(환경국) ①환경국에 환경위생과, 녹지과, 하수과를 둔다.

②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
2.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및 공해감시
3. 식품 및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·시행
4. 식품 및 공중위생 지도·감독

③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시녹화사업 및 국토공원화 운동 추진
2. 공원조성계획 수립·시행
3. 산지조성 및 산림보호

④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하수 및 치수행정
2. 하수시설에 관한 업무

제10조(건설교통국) ①건설교통국에 도시과, 도로과, 교통행정과, 건축과, 시설과를 둔다.

②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시개발종합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
2.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·허가
3.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재개발사업 시행
4. 지적 및 토지관련 사항

③도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도로관리
2. 토목공사 감독 및 교량·도로·지하도 시설
3. 도로보수 및 가로등·보안등 관리

4. 공동구 유지보수

5. 옥외 공고물 관리

④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·조정

2. 자동차운수사업 인·면허업무

3. 불법 주·정차 지도·단속

4. 주차장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

⑤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일반건축물 허가

2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공동주택 관리

3. 주택건설사업자 관련업무

⑥시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용, 공공용건축물 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

2. 각종 공사 관급자재 수급 및 조달

3. 공용, 공공용건축물 신축 관련 용지매수협의 및 보상업무

4. 청사건축물 보수·유지관리

제11조(계설치 및 사무분장) ①실·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.

②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문화공보담당관, 사회진흥과장, 사회과장, 환경보호과장, 가정복지과장, 도시과장, 건설과장”을 “공보담당관, 사회복지과장, 환경위생과장, 여성정책과장, 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②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문화공보담당관실”을 “공보담당관실”로 한다.

③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하고, “문화공보담당관실”을 “문화체육과”로 한다.

④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⑤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제5조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하며, 제6조제1항중 “문화공보담당관실”을 “문화체육과”로 한다.

⑥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⑦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“문화공보담당관실”을 “공보담당관실”로 한다.

⑧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⑨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제4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⑩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사회진흥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⑪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사회진흥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⑫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사회진흥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⑬부천시정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⑭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⑮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⑯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⑰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⑱부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여성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⑲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정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보사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5항중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하며, 제11조제1항제1호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동항제2호중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⑳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서식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”으로 한다.

㉑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중 “예산계장”을 “경영사업계장”으로 한다.